

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31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11. 21.

발의자 : 여상근의원 외 3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의 규정에의거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일부 규정을 보완 함으로써 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의원 "4분 자유발언" 조항규정(안 제33조의2)
- 나. 위원회 안전심사시 "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한지정"(안 제52조제4항)
- 다. 위원회 안전심사시 "전문가의 활용" 조항규정(제52조의2)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63조(회의규칙)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조, 제33조, 제52조.

고성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고성군의회의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 (4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·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의 발언(이하"4분 자유 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

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 (위원회심사)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회에 배부되어야 한다.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 (전문가의 활용)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성명·직업등 인적사항, 위촉기간, 위촉이유등을 명시한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,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

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 신 설 ></p> <p>제52조 (위원회의심사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생략</p> <p>< 신 설 ></p> <p>< 신 설 ></p>	<p>제33조의2 (4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·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이내의 발언(이하 "4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</p> <p>제52조 (위원회의심사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현행과 같음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회에 배부되어야 한다.</p> <p>제52조의2 (전문가의 활용) 위원회는 그 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p>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	<p>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의 성명·직업등 인적사항, 위촉기간, 위촉이유등을 명시한 심사보조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심사보조자는 위촉기간 만료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,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지방공무원법 제8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</p> <p>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